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51664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나391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5166478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조성오, 장훈열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

변론종결 2021. 4. 21.

판결선고 2021. 5. 26.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8.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7. 8. 접수 제99329호로 마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6.경부터 2018. 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받아 2018. 7. 23. 현재 5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사이이다.

다. 피고 C은 2000. 7. 31.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상가 E호 중 13163.54분의 40.66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6.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해 오다가 2013. 12. 23. 그 중 13163.54분의 4.066지분(이하 ‘이 사건 상가 중 4.066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9. 7. 8. 피고 C 앞으로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 C이 다시 이 사건 상가의 40.66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인정의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2019. 7. 8.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상가 중 4.066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상가 중 4.066지분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 중 4.066지분은 피고 C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이 사건 증여에 의해 반환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들은 1992. 5.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다.

나) 피고 C은 1996년경부터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혼인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오다가 2000. 6. 11. 이 사건 상가를 18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0. 7. 3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의 매수를 위해 이 사건 상가 및 언니인 G 소유의 부동산을 각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친정어머니인 H으로부터 일부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고, 위 부동산중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무렵 피고 B은 가출하여 주민등록상 1999. 10. 16.부터 2000. 9. 1.까지 무단전출 직권말소 상태에 있는 등 이 사건 상가의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 동안 전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다.

마) 피고 B은 2013년경 이 사건 상가가 속한 D상가의 재건축 움직임이 있게 되자 상가번영회 내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D상가의 지분소유자가 되어야 하므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지분을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 C은 I 법무사사무소에 근무하는 J의 조언을 받아 이 사건 상가의 10%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 중 4.066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해 주되 피고 B이 이를 무단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 등기권리증을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피고 C의 동의 없이는 피고 B에게 교부하지 않도록 하였다.

사) 피고 C은 2013. 12. 23. 이 사건 상가 중 4.066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에게 마쳐주고, 그 등기권리증은 위 법무사사무소에 보관시켜 두었는데, 위 등기권리증 표지에 위 보관에 관한 메모가 J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 B은 2013.말경부터 위 D상가의 재건축 업무에 관여하다가 2015. 6. 24.부터 2019. 6.

27.까지 상가변영회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K(2016. 10. 18. 주식회사 L로 상호변경 되었다)의 사내이사 및 재건축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가재건축이 무산되자 이를 그만두고 그로부터 약 10일 후인 2019. 7. 8.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고 C이 다시 이 사건 상가 40.66지분 전부의 소유자가 되었다.

자) 이 사건 상가 중 4.066지분이 피고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동안에도 그 지분에 대한 각종 세금, 관리비 및 등기비용 일체는 피고 C이 부담하면서 관리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상가 중 4.066지분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파트상가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상가 및 중앙공급실

1층 1182.36㎡

2층 1276.61㎡

3층 1276.61㎡

4층 1276.61㎡

옥탑 158.77㎡

지하실 1945.7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호

철근콘크리트조

1층 1182.36㎡

2층 1276.61㎡

3층 1276.61㎡

4층 1276.61㎡

옥탑 158.77㎡

지하실 1363.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 40754㎡

2. 도로 725.4㎡

대지권의 종류: 1, 2.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 2. 12999.5분의 1011.979

中 공유자 지분 13163.54분의 4.066(갑구 순위번호 138번). 끝.